

질 의 회 신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송 광 열

지방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 여부



질의내용

- 1) ○○시에서 ○○○상점가 상징아치 설치공사를 하는데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금속공사, 미장공사, 도장공사, 부대공사,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잡공사 등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5호, 2009.2.27)에 의하면 경쟁 입찰 기본원칙은 중복제한을 할 수 없으나,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 중복제한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해 지역제한과 중복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 3) 상기 질의에서 자격제한을 할 수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소지자로 자격제한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2009.3.13)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2) 귀 기관의 질의사항 2)와 관련하여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자세하게 규정(터널을 수반하는 공사, 활주로공사, 지하철공사 등)을 하고 있으나, 상기 질의한 내용인 ○○○상점가 상



징아치 공사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역제한과 실적의 중복제한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귀 기관의 질의사항 3)과 관련하여 ○○○상점가 상징아치 공사는 건축공사가 아닌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업 소지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나 등록 제한여부의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산업 기본법령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물품 구입 관련 질의



질 의

- 1) 지방자치단체는 물품 구입시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경쟁에 붙여야 하나, 특허제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 2) 질의 ① 특허제품을 구매시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능 및 성능이 상관없는 다른 물품과 함께 일괄하여 일반경쟁(총액입찰)이 가능한지 여부
- 3) 질의 ② 특허제품을 다른 물품과 함께 일괄하여 일반경쟁(총액입찰)이 가능하다면 발주부서는 특허제품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품공급 협약에 대해 특허권자와 사전협의 후 이를 입찰공고문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여부

나. 답변내용

- 1) 질의 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은 경우 절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이고, 동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므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물품과 함께 유사물품 복수경쟁 입찰 등의 방식으로 일괄하여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질의 ②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특허 제품을 반드시 구매할 필요가 있다면 특허를 보유한 사업자와 물품공급협약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사전 협의하고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지방계약법 적용공사 영업정지 관련 유권해석



질 의

-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12호, 2009.1.13)의 Ⅲ 수의 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의 나항 8)에 의하면 견적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과 관련하여
- 2) 영업정지 처분업종이 해당업체가 참여한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보아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없는지 여부

※ A 업체가 참여한 입찰의 입찰참가자격 : 토목공사업

A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중인 업종 : 시설물유지관리업



답변내용

- 1)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의하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업종별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따라서, 발주청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정하였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질의요지

사립대학교 ○○○○단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대학이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단은 해당 대학의 학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므로 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동일 공동수급체 실적인정 관련 입찰참가 여부



질의내용

- 1) 입찰참가자격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공사로서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으로 A=303,771㎡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실적 제한한 입찰에 있어
- 2) A사와 B사가 과거에 시공비율 65:35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택지조성공사 A=411,869㎡ 준공실적이 있어, 2009년 현재 상기 입찰건에 동일한 구성상태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시공실적 제출 및 심사기준 1-4-나-②-㉔ 공동도급으로 시공한 실적이 당해 적격심사 기준의 동일공사 실적에 해당되어 과거의 구성상태가 동일한 상태로 다시 입찰에 참가한 경우 1건의 실적으로서 당해 실적 전체를 그 공동수급체 실적으로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 4) 상기 준공실적이 “4” 항 적격심사에만 인정되는지, 입찰참가자격에도 동일하게 인정받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질의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2009.2.27)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적격심사에만 인정되는 규정입니다.
- 2)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2009.3.13) 제2장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발주자가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가 입찰에 참가하려면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실적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공사 계약체결 사항 질의



질의내용

- 1) ○○학교 공사 건으로 기초금액이 636,053천원이나 입찰공고에서 행정착오로 부가가치세를 미포함 한 금액인 578,320천원으로 공고하였고, 낙찰율 86.752%인 505,361,048원에 1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체결을 완료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공고한 사실을 인지하였음



- 2) 공고시 포함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를 인정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투찰금액으로 계약해야 하는지 여부
- ※ 계약금액을 변경한다면 기초금액 636,053,000원에 대하여 86.752%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투찰 금액인 505,361,0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50,535,104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상기 규정에 의하면 물가변동, 설계변경,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상태로 입찰하여 계약을 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질의



질의내용

- 1) 당해 공사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시행하는 공사로 적격심사 항목 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대해 행정안전부 예규에서는 “제 경비의 적정성 평가는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는 적용기준을 대비 입찰서상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2) “입찰서상 반영비율”이라 함은 적용기준을 산출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찰내역



서상 입찰금액 대비 각 제경비 금액으로 산출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인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상의 요율을 의미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2009.2.27)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7>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의하면 노무비,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상기 규정에 의하면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을 산출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서상 제경비 반영비율은 입찰내역서상 입찰금액 대비 각 제경비 금액으로 산출한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근년도 자산회전을 관련 질의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표 <별표 3-2>와 관련된 질의



질의요지

- 1) 지방자치단체 철도궤도 개량공사로서 입찰참가업체에 대하여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자료가 없을 때, 최근년도 자산회전을 평가시 해당 업체 자산회전을 $\text{[매출액 / \{(기초총자산 + 기말총자산) / 2\}]}$ 로 산출(1.204851...회)하여 업계전체 평균 자산회전율(1.21회) 대비 비율(0.995702...)을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 산정(99.57%)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당해 비율(0.995702...)을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100%)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 2) 업체에 대하여 관련협회에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조사·통보한 자료



(3.55회)가 있다면, 업계전체 평균비율(3.56회)대비 비율(0.99719101..)을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 산정(99.71%)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100%)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답변내용

1) 질의1) 에 대하여

-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II.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 업계평균 비율을 관련협회에서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하면서,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직전회계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위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2> 주 5) 에 의하면 평가요소별 해당업체의 비율은 백분율(%)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산정하되, 총자산회전율은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 자산회전율을 $\text{매출액} / \{(\text{기초총자산} + \text{기말총자산}) / 2\}$ 로 산출(1.204851...회)한 총자산회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온 수치에 소수점 셋째자리를 버린 후 다시 “회”로 산정한 수치(1.2048회)에 하여 업계전체 평균 자산회전율(1.21회) 대비 비율(0.995702...)을 백분율로 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버리고 산정(99.57%)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질의2) 에 대하여

- 업체에 대하여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기술용역 적격심사 기준



질의내용

-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2009.2.27)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추정가격 2억원 이상 기술용역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의 「...면허(등록, 신고 등)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전체 또는 일부분야에서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당해 시·도와 접한 시도를 말함)의 해당 자격 소지자를 당해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규정에서
 - 가) 시·도의 단위가 모든 시·도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는 시·도만 적용되는 규정인지?
 - 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단위로 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4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에 분야별로 사전심사 참가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를 소지한 지역사업자가 전체 또는 일부분야에서 10인 미만인 경우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접한 시도)의 해당자격소지자를 당해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련자격의 소지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입찰의 경쟁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인접 시도내 사업자까지 당해 시·도 관할구역내 사업자로 인정하려는 취지입니다.
-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시·도란 광역시가 포함된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시·도가 시·도 단위로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내역입찰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27호) 관련



질의요지

시설 공사(기초금액 225억원) 내역입찰 시 적격심사에 있어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 점수가 미달되어 부적격 통보된 경우에, 입찰시 제출한 내역서 중 일반 관리비 및 이윤 항목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Ⅳ 항목에 의하여 집행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Ⅳ-3-가항목에 따르면 Ⅳ-2 항목의 무효입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입찰시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비용의 금액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 2) 귀 질의의 경우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내역입찰 공사로서 적격심사에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항목의 평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결과 점수가 미달되어 부적격 처리 된 경우 그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을 수정하여 다시 심사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회계연도에 걸치는 계약체결 가능 여부



질의요지

- 1) 2009년도에 다음해 신학기 교과서 구매를 위한 계약을 2009.12.20일자로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009.12.20 ~ 2010.2.28까지로 하는 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2009년도 공사를 2010.2.28 또는 2010.3월 이후까지 이행하는 계약의 가능여부
-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상대방의 행위 완료”는 대금청구시인지 또는 준공 등 이행의 완료시인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다만, 동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2009년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2010년 이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다만, 당초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계약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약(지출 원인행위)을 하였으나 계약 이행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계연도 내에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다음회계연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습니다.
- 3)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의 “출납폐쇄기한까지 상대방의 행위가 완료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상대방의 행위 완료”는 준공 등 이행이 완료된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유효여부 및 조치사항 관련 유권해석



질의내용

- 1) 2009년도 A시 양식어업 정화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전에 관련 면허가 다른 업체로 승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결국 면허 없는 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임
 ※ 5.15~5.21 : 입찰공고 5.27 : 낙찰자 결정 통보
 6.2 : 영업 승계 변경 등록(주 ○○건설 △△△→주 □□건설 △△△)
 6.5 : 계약 체결 6.8 : 사업 착수
 6.10 : 영업승계 변경등록에 따른 계약상대자 변경 요청
 6.10 : 용역 중지 명령
- 2) 본 계약이 유효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본 계약이 무효라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2009년도 A시 양식어업 정화사업 용역과 관련하여 (주)○○건설이 낙찰자로 결정(5.27)되어 계약을 체결(6.5)하였고, (주)○○건설이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전에 영업승계 변경등록(6.2)을 하였으나 계약 체결시 종전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제1항 제8호 아목 에 의하여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VII-5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대상이 됩니다.
-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서류 제출여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능력여부 등을 사실조사 하여 계약의 해지 및 해제 여부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금 정산 관련 질의



질의요지

시설공사(1억미만 공사, 공사기간 90일 정도)의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시까지 선금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여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선금(이자 포함)전액을 반환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반환시 선금과 이자 반환금을 준공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재정법 제73조에 의하면 선금은 그 성질상 선금급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 2) 공사의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제179호) Ⅲ-5-나 항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금 반환금과 그 이자를 준공금 과 상계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상 하도급 직불 의무 규정 관련 질의



질의요지

시설공사에 있어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은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하수급자가 직접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특수조건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Ⅱ-1-나 항목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등에 규정 된 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지방계약법 제6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2) 따라서,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제3자인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조건을 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인 원도급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없이 일률적으로 특수조건으로 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공사의 일시정지 관련 질의



질의요지

당초 설계시 지방조사 보고서의 지하수위보다 실제 현장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설계를 변경하였다면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 공사정지기간(427일)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잔여계약금액은 선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VIII-6 항목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일정한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정지 시킬 수 있고,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2)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바,
- 3) 지하수위의 변동 등으로 인한 공사정지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초과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인지 여부는, 지하수위 상승의 이유 및 구체적인 설계 오류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며,
- 4) 위 예규 VIII-6-라 항목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60일 초과기간에 대한 지급금액 산출시 기준은 잔여계약금액이므로, 공사중지기간이 60일이 초과되는 날 현재의 기성금을 제외한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체상금 산정 관련 질의



질의내용

1) 공사개요

- (가) 공사명 :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공사
- (나) 계약금액 : 1,042,508,000원
- (다) 공사기간 : 2008.12.15~2009.3.31(계약일 2008.12.12)
- (라) 기성금액 : 600,000,000원(기성검사일 2009.2.23)
- (마) 기성내용 : 교실 바닥공사(완료), 복도바닥 탄성테라조 공사(0%), 내벽도장(90%), 내외부 석공사(75%), 옥상방수공사(0%), 창호코킹공사(75%), 천정공사(95%), 외부 판넬공사(50%), 외벽도장(50%), 흙통공사(70%)

- 2) 학교공사에 있어 교사동 내부는 공사완료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외벽은



판넬공사 시행 중으로 외부비계 등이 존치해 있고 일부 지역은 위험요소가 있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체상금 산정시, 기성금이 지급된 기성부분을 공제하고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로서 기성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의하면 지체상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귀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비록 외벽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교사동의 내부공사가 마무리되어 검사를 거쳐 기성부분을 인수하였거나 사실상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에서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교사동의 내부공사의 일부분이 마무리되어 교사동의 관리·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안에 대한 판단은 현장에 대한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계변경 관련 질의



질의요지

상수도공사에 있어 예정가격 작성시 공사 시공구간 중 마을안길이 협소한 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가산출시 소(小) 운반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 설계변경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이하 일반조건) I-2-라 항목에 의하면 설계서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의미하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설계서가 아닌 단가산출서상 소 운반비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감액조정 관련 질의



질의요지

시설공사의 물가변동에 따른 감액조정시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대가를 모두 공제할 수 있는지 또는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통보한 날 이후의 기성대가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제5항에 의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조정금액은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물가변동 적용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기준일 이후에 계약금액 조정 없이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는 조정대상 금액에서 공제되며,
- 2)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Ⅸ-5-가 항목에 의하여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를 개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개산금으로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기성대가를 물가변동 조정대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3) 따라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 지급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

용대가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계약금액의 감액이 예상되어 기성대가를 개산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그 기성대가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계약업무(채권양도) 관련 질의



질의내용

- 1) A, B, C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던 중 경영악화에 따른 부도로 공사를 포기하였음. 이후 타절 기성을 하였고, 기성금 지급을 위해 청구를 받았는데 C업체에서 자기가 수령할 기성대금을 A업체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함(물론 A, B, C업체의 지분대로 청구를 하였고, 세금계산서와 사용인감을 날인하였음)
- 2) 이러한 행위가 채권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답변내용

- 1) 행정안전부 예규 제179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의 당사자로서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또한, 지방재정법 제71조(지급명령의 제한)에 의하면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C업체가 수령할 대금을 A업체에게 송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도급계약 출자변경"과 관련한 질의

※ ○○시에서 공동도급으로 계약체결한 “□□□□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공동수급체 출자비율 변경승인을 요청한 것과 관련한 질의



질의내용

- 1)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칙적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 다만,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협정서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work-out)절차가 개시된 사항도 출자비율 변경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1)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 227호)의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 질의한 사례에서 R 건설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work-out)가 개시('09.4.3)된 상황에서, R 건설회사가 당초 협정서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하여 공동수급체 전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변경신청을 한 경우라면 “파산·해산·부도”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여 출자비율에 대한 변경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수의계약 지역사업자 및 부정당업자 관련 질의



질의요지

- 1) 수의계약에 있어서 견적서 제출을 지역사업자(지점 포함)로 제한한 경우에 지역사업자 여부는 지점 이전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2) 등기 완료 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 체결한 사실이 사업완료 후에 발견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Ⅲ-1-나-3)항목에 의하여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지역사업자로 견적제출대상을 제한한 경우에 Ⅲ-1-나-4)항목에 의하면,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당해지역에 소재한 자(지점을 포함한다)로 제한하는 것이며, 그 소재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으므로,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류 부정행사 여부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질의



질의요지

실시설계용역 공고시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는 업종제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고문상



에만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첨부하고 공고를 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가하여 1순위로 되었으나 무효인 입찰로 밝혀진 경우, 업체의 고의성이 없는 입찰로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9호에 의하면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무효인 입찰로 된 것이 고의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입찰시 해당 업체가 공고문상의 참가자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